

Korean Tax Update

June 2021, Issue 84

[조세뉴스]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 [전문보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됨. 한편,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등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함.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국세청) [전문보기]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고 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며, 국세청은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판례]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 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세자승)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1 두 31603 판결(심리불속행)

-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제3자 사업자들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 사이에 체결된 할인제공약정이나 업무제휴약정, 판촉행사약정 등에 따라 산정·지급되는데, 정산 여부와 시기, 방법, 분담 정도 등

은 모두 위와 같은 약정에서 정해지고 그 정산관계나 이행 여부는 원고와 고객들 사이의 상품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바, 정산금을 제3자 사업자들이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로 볼 수는 없음. 또한 원고와 제3자 사업자들이 원고와의 상품 거래에서 고객들이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치화하여 이를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형태로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객들의 상품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할인 여부 및 할인받는 금액이 고객들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관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고객들이 이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게 되면 고객들로서는 그 만큼 향후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소멸될 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가 원고에게 양도되어 제3자 사업자들을 상대로 정산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를 표창한 채 잔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고객들이 사용한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경우 그 자체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인약정을 수치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정산금이나 고객들의 쿠폰이나 할인권, 상품권 등의 사용분은 모두 에누리액에 해당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 295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1 조 제 6 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승)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 두 55954 판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 (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제6항은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 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고,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그 행사이익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그 행사일 당시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의 차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함.

[심판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외에 지점사업장을 설치하여 인근 선박항의 단일항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을 증설투자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1 서 0623, 2021. 5. 20.

- 조특법 제130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산업시설 등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함과 더불어 지방산업의 경영여건 향상을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대상에 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자'가 아닌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고정자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용을 감면배제사유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단일항로에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이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선박의 증설투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사업시설의 집중 등을 유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도 단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 하여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세감면을 배제할 경우 앞서 제시한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 및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른 배제기준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선박이 실제로 사용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선박의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적용을 구하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20 서 8302, 2021. 5. 31.

- 청구법인은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업계의 관행에 따라 디자인 경쟁력 상생을 위해 공모에 출품할 건축디자인만을 전담하는 부서인 쟁점부서를 설치하였고, 공모에서 당선된 이후 실제 설계업무는 현업 설계부서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청구법인 내에서 쟁점부서의 조직과 업무가 현업 설계부서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부서에서 수행한 주요 디자인업무 리스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다수의 건축설계공모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는 바, 이와 같이 고유디자인을 개발하여 공모에 입상하였다면 이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진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을 시도하는 개발과정을 통하여 설계측면에서 기술적 진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쟁점부서의 축적된 노하우를 DB 화하여 청

구법인의 디자인을 계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인건비는 디자인 업무 결과물,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인사기록카드 등을 통해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쟁점부서에서 수행한 건축디자인을 보다 실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문화된 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주업체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용역비는 건축디자인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디자인 개발전담부서인 쟁점부서에서 지출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용역비는 조특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조심2020서8105),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조심 2020 중 0854, 2021. 4. 12.

-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기본통칙 21-0-1 제4호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열거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이 「법인세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거래 시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한 행위는 관련 법령 및 관세청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2013.7.26.) 등을 감안할 때 동 법인의 단순착오이거나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2016관279 등), 달리 이 건 거부처분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제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거래가격을 과소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세관장들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제품의 수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미 판매된 제품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신탁회사에게 이전한 쟁점토지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20 지 2025, 2021. 5. 11.

-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최초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2010다 84243)인 바, 비록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의 신설승인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신탁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그 개발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은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주체를 자신으로 변경하였고 지식산업센터의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신탁회사로 봄이 타당하여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사]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용)

2019-심사-752, 2021. 5. 20.

- 청구인은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이 사건 민간투자비를 사용료 명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점, 사용료는 이 사건 민간투자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고 청구인이 일정 금액 기준으로 보장·환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면서 사업시행자로부터 임대료 상당의 다른 반대급부를 지급받는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은 이 사건 시설물을 기부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대가를 사용료 형식으로 지급하는 거래의 일부일 뿐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설사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을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기부채납 재산가액을 관리운영권의 부여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바,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것을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만 60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 조의 4 제 1

항 제 7 호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66, 2021. 3. 30.

- 내국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만 60 세 이상의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 88 조 제 3 항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납부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국민연금 외 「조세특례제한법」 제 30 조의 4 제 4 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만 60 세 이상 내국인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 조의 4 제 1 항 제 7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제 46 조의 3 제 3 항 제 2 호의 지분의 연속성 위반여부 판단 시 주식 처분 비율 계산할 때 주식수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58, 2021. 4. 14.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 46 조의 3 제 3 항 제 2 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 80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가목의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전체 주식등의 2 분의 1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에서 '주식등'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것임.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의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 2021. 5. 20.

-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 조 제 8 호에 따른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직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7 조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453, 2021. 5. 24.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6 조의 2 제 3 항 제 14 호의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2 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회생담보권 설정 여부와는 무관하고,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조달방법 등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된 토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임. 다만, 회생계획에 처분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지 않은 토지의 양도가 위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회생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법원의 허가 여부 및 허가 조건, 양도대금을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사업부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괄승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1 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16, 2021. 5. 25.

- 내국법인이 보증사업부를 분할하여 다른 내국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보증사업부 직원들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 직원들의 근로관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 하는 경우 해당 보증사업부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4 조 제 1 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임.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47, 2021. 5. 25.

- 내국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Knowledge Center

kr-fmtaxtkc@kr.kpmg.com

© 2021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